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 (56219), ⑤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

지원내용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보다 증가하여야 함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 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2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1년 7월 1일 이후 5인 이상 전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 법정시행일
- ▶ 경과에 따라 주근로시간 단축형은 실근로시간 단축형으로 통합 운영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모든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①고용노동부(고용센터)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②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③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④여성가족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 개발훈련」, ⑦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⑧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 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로 예외 규정
- ▶ 대규모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간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 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향」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 국가 및 공공기관
-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2년 지급은 상반기 6개월간 한시적 지원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 (지원금액)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 단시간 노동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 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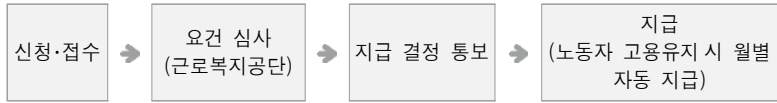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 월 평균보수 기준(219만원 이하 → 230만원 미만) 및 지원금액(7/5만원 → 3만원) 조정, 지원기간(12개월 → 6개월) 조정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서면 등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처리절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요건, 신청 절차·서식 등 세부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참고

9-4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유형

선택 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활용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1.1.1. 이후 시차출퇴근제 신규지원 폐지

-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체 현황(법령 위반, 근태관리 가능성, 업체 규모, 재정건전성 등), 사업내용(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유연근무 활용 규모, 근로조건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Q&A

Q.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승인 이후 유연근무를 활용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인원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년간 지원인원 한도는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 내에서 최대 70명(단, 시차 출퇴근제는 30명)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 성립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9-5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소기업의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종 류	지원금 용도
정보 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체 현황(법령 위반, 근태관리 가능성, 업체 규모, 재정건전성 등), 사업내용(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인프라 활용 계획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Q&A

Q. 노트북, 태블릿 등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택근무자용 정보통신기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임금감소액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월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월 20만원(정액) 지원
-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월 30만원(정액)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7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등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 시키는 경우
-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다만,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960만원(중견기업 480만원) 1년간 지원(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9-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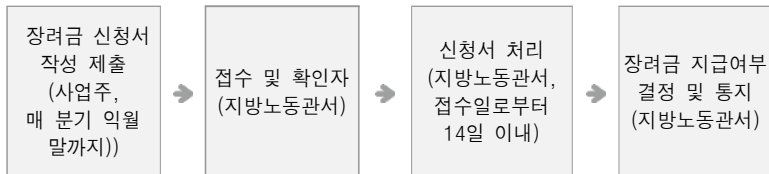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재직 근로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통 주점업(56211), 무도유통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 201년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20%를 초과한 사업주

- 지원내용**
- 기업별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

신청·접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Q&A

Q.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도 근로자를 60세 이후로 계속 고용하면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용어설명

계속고용제도 :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9-9

고령자 고용지원금('22년 신설 시행)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에 대해 당해 분기 월평균 인원이 과거 3년간 월평균 인원보다 증가한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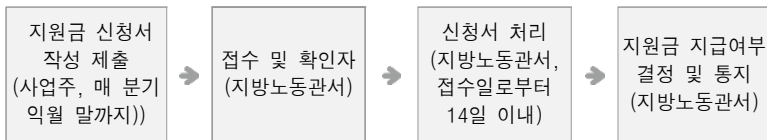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내용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

신청·접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Q&A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합니다.

용어설명

고령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에서 사용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9-1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
 -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고용유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중에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을 지급
 -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 (고용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을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 * 해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인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총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 (금액)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부여한 사업주부터 세 번째로 부여한 사업주까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가산)
-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③ 대체인력 지원금

-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기)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 단, '21.12.31.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 신청 가능
- ▶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월 10만원)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월 30만원) 폐지
 - * 단, '21.12.31.이전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① 육아휴직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③ 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Q&A

Q.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을 포함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사항은 '22.1.1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Q.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 중인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나요?

A.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되나,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대체인력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 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

9-1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50억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에 한함)
 - (추락방지 안전시설)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하도급) 포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안전투자 혁신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설비교체 또는 공정개선 참여 신청자

- 위험기계(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권동식리프트), 노후(30년 이상)기계(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만 해당) 교체

* '09.9.30일까지 생산된 카고형 이동식크레인에 한함

** '09.6.30일까지 생산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한함

- 표준산업분류 상 뿌리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조업 사업장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을 보유한 사업장
-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중업종(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산재보험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전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0명인 사업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휴·폐업 중인 사업장

지원내용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 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화재·폭발, 폭염,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65% 또는 정액 지원
 - 지원품목: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 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설치비용
- (안전투자 혁신사업) 총 소요비용의 50%(위험기계교체 7천만원 / 위험 공정개선 1억원)

구분	지원내용
위험기계교체	카고형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원치식, 권동식, 유압식 리프트
	안전검사대상 30년 이상 노후 위험기계
위험공정개선	뿌리공정 중 주조, 소성, 표면처리 공정
	고위험 TOP3 업종의 제조공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 확대(위험기계 교체 3종→9종, 위험공정 개선 뿌리공정→뿌리공정+고위험 3대 중업종)
-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한도 감축(위험기계 교체 1억원 한도→7천만원 한도)

신청·접수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및 직접 방문제출
-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지원
 - * [위험기계교체] 설비의 제작연식, 소유기간, 교체품목 등을 종합하여 선정
 - * [위험공정개선] 사업주의 의지, 위험수준, 영세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문의처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대표번호(1588-3088)
-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 대표번호(1644-4555)

Q&A

Q.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지원과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한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안전투자 혁신사업 이동식기계 지원 시, 기존 설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설비 인도 후 30일 이내 기존 설비의 폐기 및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이동식기계의 경우 대표자와 설비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를 말함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름

9-12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 건강진단비용지원

보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사업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신규사업장 100%(100만원 한도), 기존사업장 70%(40만원 한도)
 - * 신규사업장이란 과거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2차 검진비용 전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확대

신청·접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한 연중 수시접수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공단에서 심사(적정성 심사)하여 비용 지급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는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공단으로 전송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Tel : 052-703-0784)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Q&A

Q. 비용지원 사업 시행 전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 시행 전, 당해연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하나의 법인(법인등록번호 기준) 또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기준)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 미만을 판단합니다.

용어설명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현장 내 유해인자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제도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9-13

근로복지기금지원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지원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20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3년간 매년 6억원 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등

신청·접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우편접수
(주소)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4층 복지계획부

신청기간

- 근로복지넷(workdream.net)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

처리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4)
- 근로복지넷(workdream.net) 홈페이지 참조

9-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대상기업)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각급 학교 등
-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희 주점업, 무도 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 ▶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등
- (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청년
 -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사업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규모) 2022년 채용 청년 14만명

신청·접수

- (신청시기) 2022년 1월 중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
 -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 (참고) 사업 시행시기 및 세부요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 고용노동부 1350
-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공고문 및 지침 참조

▶ 용어설명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운영기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신청, 자격요건 심사, 장려금 지급심사 등을 위탁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9-15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내 사업장

지원내용

-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 사업장당 1개에서 최대 3개 영역까지 컨설팅 지원(10주~21주)
 - * (컨설팅 분야) ①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② 작업조직·환경개선 ③ 고용문화개선 ④ 임금체계개선 ⑤ 평가체계개선 ⑥ 장시간근로개선 ⑦ 평생학습체계 구축 ⑧ 장년고용안정지원 ⑨ 안전일터 조성
- 중소기업 CEO 코칭, 일터혁신 CEO 클럽
 - 중소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코칭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일터혁신 우수기업 대표를 CEO 클럽 회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별 일터혁신 기반구축 및 확산 지원
- 일터혁신 교육
 - 인사노무 담당자, 일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개념·필요성, 사례공유, 변화관리 등 교육
-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성과를 낸 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증·시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컨설팅 물량 확대('21년 2,484건 → '22년 2,836건)
- ▶ 정책과 연계한 대상사업장 풀(pool) 구축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대상사업장 발굴

- 신청·접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상반기 중 상시 접수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000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참고

Q&A

Q. 한 사업장에 동일한 영역으로 연속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연속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장 선정 심사 시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컨설팅 수행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및 연계성, 사업장 참여 및 협조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컨설팅 완료 후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컨설팅 완료 후 3개월간 이행관리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컨설팅 결과로 설계된 내용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도와드립니다.

용어설명

일터혁신 :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9-1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 규모 관계 없이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훈련개시일로부터 비용지원완료 기간 중 폐업한 법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불가
- ▶ 훈련수료일 이전 폐업한 개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불가
 - * 단, 폐업신고 일자 당일에 HRD-Net 및 고용보험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 【집체, 현장훈련】: 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 인원 × 지원비율

〈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 〉

기업구분	훈련구분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향상, 양성훈련 등	자체 훈련	100%
		위탁훈련	90%
대규모기업	향상, 양성훈련	6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향상, 양성훈련	4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 **【원격훈련지원금】:** 등급별 지원금액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을 × 조정계수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 편
		교수설계유형	기술기반유형	
A	6,160	12,100	18,150	3,960
B	4,180	8,140	12,210	3,080
C	2,970	5,940	5,910	2,170

* 위 금액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위탁은 90%), 대규모기업은 6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의 비율로 지원(외국어과정 및 직무법정훈련은 규모별로 50%/30%/20% 지원)

- 위의 훈련비 이외에 훈련수당, 숙식비, 임금의 일부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원
 -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
 - <임금의 일부> 유급휴가훈련으로 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0%)』지원
 - 비정규직 대상으로 근무시간이내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지원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식비나 숙식비를 지원한 경우,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월 330,000원 한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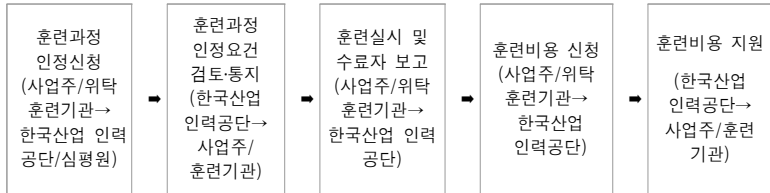
- ▶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수료 경우: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2.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 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신청·접수 ●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분사무소),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훈련과정인정신청 : 훈련개시 7일 전까지(자체훈련은 5일 전까지, 채용예정자 과정 및 NCS적용과정은 훈련개시 2주 전까지)
- 훈련개시전까지 실시신고, 훈련생 명단변경은 수료보고 전까지
- 수료자보고 및 확정 :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격훈련은 30일 이내)
- 훈련비용 신청: 훈련 종료 후

<훈련 실시 및 비용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지부·지사(대표 전화 1644-8100), 직업훈련 정보망(www.hrd.go.kr)

Q&A

Q. 지원금은 훈련만 하면 제한없이 계속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 위의 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용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 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바랍니다.

Q.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나요?

A.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훈련(=위탁훈련)도 가능합니다.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수행하는 훈련이고,
-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훈련 방법은 동일하나, 지원되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9-17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자금지원 공통사항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대일 경력진단 및 심층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미만인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평균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재직자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계좌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의 경력설계 서비스에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 전담 경력설계 매니저의 일대일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심층 경력설계

- 신청·접수**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재직자가 직접 신청(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지원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Q&A

Q.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에 참여하려면 내일배움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심층 경력설계와 직업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HRD-Net(www.hrd.go.kr)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9-1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기업 혁신 지원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고,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제품개발, 환경개선, 조직문화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 예술인과의 협업활동 및 지원(공간·재료비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행사 등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 (예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운영 할 예술인을 섭외 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 ▶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 또는 단순 업무의 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이 제출한 과업 해결을 위해 예술인 4~5명을 6개월간 파견(예술인 1인당 6개월 간 120~140만원 활동비 지원)
- 과업 해결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모니터링 제공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2년 1월 중 공고(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접수
- 심사방법: 서류 심사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항목(안)	세부평가 내용
작성의 성실성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제시된 내용·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사업의 이해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협업 역량	▶ 파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협업주체의 적절성	▶ 지원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한가?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가능성이 있는가?
예술협업 지속가능성	▶ 신청 기업·기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협업주체가 지속적인 예술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 협업주제 방향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가?

제출서류

- (필수) 사업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
- (선택) 기업 소개 자료 1부.
 - * 기업 소개 자료는 예술인 매칭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처리절차

사업신청	심사	예술인 매칭	과업수행
2022년 1~2월 중	2022년 2월 말	2022년 3월 중	2022년 5~10월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지원 사이트 (goartist.kawfartist.kr)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검토	과업을 함께 해결할 예술인(4~5명) 매칭	매칭된 예술인과 과업 수 행(6개월)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0)

Q&A

Q. 예술인과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심의를 통해 선정이 되었더라도 예술인과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아쉽지만 사업 참여가 어렵습니다.

Q. 기업 사정 상, 중간에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더예술인에게 사업 참여 어려움을 잘 설명해주시고, 즉시 재단 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리더예술인 : 기업의 이슈를 진단하고 참여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및 경험과 기업을 매개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기획·운영·성과관리 등을 진행하는 예술인

참여예술인 : 리더예술인과 함께 예술협업활동을 기획·운영 및 실행하는 예술인

9-19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소재의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 형 벤처기업 발굴하여 육성·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사업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필요 기업
 -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재)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사업 : (재)창업 3년 이하(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사업 : 창업 7년 이하(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2회 이상 지원 하는 경우

〈유의사항〉

-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단계별 약 3~9천만원 내외(자부담 매칭/확정 금액은 공고안 확인)
 - * 인건비, 임차료, 시제품개발을 위한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세부내용은 공고안 참조)
 - 사업 전반 지원 사항
 - * 관광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벤처 아카데미 운영
 - * 기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단·담임·전문 컨설팅 제공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여행상품 기획전, 관광벤처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 지원
- *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마련
- *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DX역량강화캠프, 맞춤형 리서치 및 테스트,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등 지원
-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개최 등 지원

신청·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 사업의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화전략, 사업의 지속가능성, 관광산업 연광성, 리더십 등 (공고안 확인)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안 확인)

처리절차

- 공모전 공고 및 사업설명회(2월) → 단계별 선정심사(서류·현장평가 등 /3~4월) → 지원내용 협약체결(4~5월) → 기업별 사업화 및 맞춤형 지원 (5월~11월) → 최종 성과평가(11~12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02-729-9466)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0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관광 기업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여행업, 여객운송업(관광교통), 문화예술공연업, OTA 기반 관광기업, ICT 결합 관광사업 등 국내 여행 산업 진흥과 관련된 모든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외 업종
 -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포함),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딩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내용

- 관광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기본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크라우드펀딩용 IR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 지원
 - 참여 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연간 펀딩 실적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시상 및 시상금 수여
 - 펀딩 성공 기업 대상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투자자문위 IR 등) 추진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펀딩 성공상품 대상 '관광공사 크라우드펀딩 오프라인 상설매장' 입점지원 ('22년 상반기 오픈예정)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ktocrowdfunding@knto.or.kr)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후 공지사항 참조(tourbiz.or.kr)
- 심사방법 : 신청서와 제출자료 기반 서류평가 진행
- 평가내용 : 지원 적합성, 계획의 적절성, 기업역량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4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1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엑셀러레이터 연계 육성 및 투자 지원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관광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민간 투자유치 등을 통해 관광기업의 단기간 고속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초기 관광 스타트업(창업 3년 미만)
 - 세부기준은 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제공
- 한국관광공사 보유 관광산업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지식인프라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
- 우수 참여기업 대상 투자 유치 지원 등
 - 세부사항 모집 공모문 참조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투어비즈 홈페이지(tourbiz.or.kr)공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3~4월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심사내용 : 기업역량, 시장 적정성, 사업아이템 경쟁력, 관광산업 관련성 등 (심사 기준은 엑셀러레이터별 변동 될 수 있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 용어설명

엑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9-22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관광기업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공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전환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혁신 바우처 제공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중소기업 및 융·복합 관광기업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관광 혁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형, 중형, 소형 등 규모별 바우처 제공

분야	프로그램	프로그램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관광 특화 혁신 지원	관광 혁신 서비스 개발	관광 상품/서비스 기획 관광 부문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개발, 기존 비즈니스 모델 진단, FIT 여행 상품 개발 등
		관광 산업 특화 리서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관점에서의 관광산업 동향 및 동종 업계 관련 시장 조사, 빅데이터기반 여행자 동향조사(소비지출, 이동통신, 상권분석) 등
	관광 혁신 서비스 구현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실감형(VR/AR) 콘텐츠 제작, AICBM 기술 구현, 챗봇 도입, 여행 상품 큐레이션 기능 개발 등
		UX 고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홈페이지 UI/UX고도화, 모바일/ O2O 플랫폼 구축,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및 솔루션 개발 등
컨설팅 및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경영체계, 구조개선 등의 경영 개선 진단, 사업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자문 등
		기타 전문 서비스 세무, 재무, 노무, 법률 관련 전문 자문 서비스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진단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기업 디지털 역량 및 정보기술환경 분석과 진단, 개선 APP의 QA Test, MICE 온라인 컨설팅 등

분야	프로그램	프로그램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서버 및 개발환경 구축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 IaaS) 구축, 관광기업 SW 개발을 위한 ICT 환경 구축, 관광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ICT 솔루션 도입 ERP/CRM/Analytics 등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SaaS-based ICT 솔루션 도입 등
마케팅	홍보/ 마케팅 /광고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콘텐츠 전략, 채널 믹스 전략, SEO마케팅 전략 디지털/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전략 수립, SNS마케팅 방안 수립 등
		홍보 지원 광고 콘텐츠제작, 국내외 마케팅/홍보/광고 집행, 유튜브 영상 제작, 기업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라이브 커머스 활용 등
	디자인 개발	브랜딩 브랜딩, 네이밍, 브랜드 콘셉트 도출, 기업 맞춤형 BI/CI 개발 및 고도화 등 디자인/콘텐츠 제작 상품디자인, 오프라인 홍보물, 모션그래픽 영상, App/Web UI SNS콘텐츠 제작, 패키지 디자인, 3D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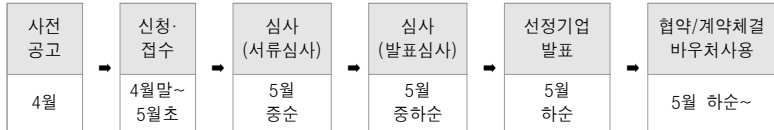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바우처 유형 확대) 중형바우처 유형 확대
- ▶ (서비스메뉴판 개선) 검색 기능 간편화(지역별/서비스 유형별/ 키워드별/ 금액별 검색),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반영, 메뉴판 구체화
- ▶ (네트워킹 촉진) 기업매칭, 성과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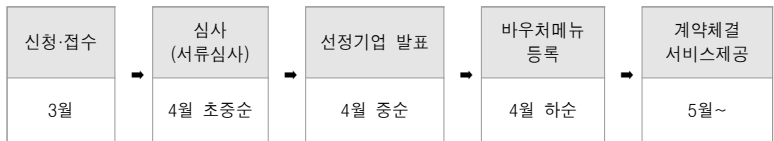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모기간 *잠정 일정이며 변동 가능
 - (수혜기업) 2022년 4월
 - (제공기업) 2022년 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운영시스템을 통한 접수
 - 홈페이지 : <http://tourvoucher.or.kr>
- 공모일정/방법 *잠정 일정이며 변동 가능

- (수혜기업) ▶ 서류심사(공동) ▶ 발표심사(중형·대형만 해당) ▶ 최종선정
 - (평가방법) 혁신가능성, 바우처활용계획 등, 총점 상위순 선정 (상대평가)
 - (평가위원) 관광, IT, 창업, 투자 부문 외부전문가



- (제공기업) ▶ 서류심사 ▶ 최종선정/서비스 등록
 - (평가방법) 서비스 품질 적정성, 안정성 등 총점 60점 이상시 선정 (절대평가)
 - (평가위원) 조직·인사/재무회계 부문 외부전문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성과평가
 - (수혜기업) 바우처서비스 종료 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검수를 통해 서면평가
 - (제공기업) 서비스별 평가결과를 매년 집계,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으로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 도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4)
- 관광 혁신바우처지원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

9-23

관광플러스 팁스

관광분야 기술융합 지원

중기부 TIP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한 관광기업의 기술융합 및 비관광 기술기업의 관광분야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기부 TIPS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기업 및 졸업 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 (부분별 세부 자격은 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관광 특화 사업화 자금 지원(2개년)
● 투자유치 지원, 관광 산업 연계 지원
● 관광 관련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투어비즈 홈페이지(tourbiz.or.kr) 공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3~4월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 심사내용 :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관광산업 관련성, 사업 확장성 및 지속성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용어설명

팁스(TIPS)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 운용사가 스타트업을 선발해 1~2억을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최대 5억), 창업사업화(최대 1억),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 등 최대 7억원을 연계 지원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 지분투자)도 추가 지원 가능

9-24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관광기업 해외 진출 지원

혁신 성장이 가능한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멘토링, 판로개척,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연간 매출액 규모 5억원 이상,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개년 후속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등 조건 중 1개 이상 달성한 관광분야 중소기업
 - 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 (예비교육) 멘토링 및 교육 등 해외 진출 전략 수립
 - (사업화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판로개척 등
 - (후속지원) 성과평가를 통한 맞춤형 후속지원(홍보마케팅, 투자유치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신청방법
 - 3월~4월 예정 / 온라인 접수(엑셀러레이터별 개별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영문)
- 심사내용 : 창업기업의 우수성/ 사업성/ 관광산업 연관성/현지 진출 적합성 등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2)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5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창업·경영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지원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창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등 원스톱 해결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예시) 전통적 관광기업(관광진흥법 상 7대 업종) + 융복합 관광기업(ICT 결합 관광플랫폼 기업, 창의적 관광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본 상담 진행 시,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별도 없음
- * 심화 또는 현장 상담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분석 후 기업별 진행 예정

지원내용

- 상시·지속적인 관광분야 특화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채널(관광기업지원센터)을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중소기업의 경영상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구분	일반상담	심화상담	융복합 협력 자문단
상담 분야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창업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운영방안 ·일반 관광 분야 관광법규(숙박업, 음식점, 여행업 등) ·정부 지원사업 분야 ·기타 간단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특허 ·인사/노무 ·재무/회계 ·판로/마케팅 ·해외진출 ·관광벤처 ·문화/콘텐츠 ·신규 아이디어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제도 개선 제안 ·국내외 마케팅 ·투자/펀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개발 ·지역특화산업

처리절차

단 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 분	온라인·유선 상담	내방상담	전문가 심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내 용	에로사항 접수 및 상시상담 (간단 에로사항 해결, 내방상담 예약, 컨설턴트 배정 등 추가 단계 진행)	컨설턴트 상담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 사안에 따라 전문자문단 배정)	전문자문단 심화 컨설팅 (주요 사안에 전문자문단의 심화 컨설팅 제공)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 분석 및 대면 컨설팅)
운영(안)	상시 컨설팅 (월~금) 09:00~18:00	사전 예약제 (월~금) 09:00~17:00	사안에 따른 관련 전문자문단 배정	-기업 현장 출동 (사전 예약) -지역 관광센터 연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 전화 : 02-729-9494/9454(평일 09:00~18:00)
 - 온라인 : www.tourbiz.or.kr 회원가입 후 상담요청 게시글 작성
- 신청기간 : 상시 접수(내방상담 및 심화상담 시 미리 일정 협의)
- 처리기간 : 단순상담 및 문의는 접수 후 1~3일 내 처리, 심화상담은 상담 주제에 적합한 자문위원 섭외 후 일정 조율까지 약 1~2주 소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02-729-9489)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관광여가 사회 실현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
(단,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지원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 휴가샵 온라인몰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대상별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우수기업) 정부포상, 기업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상품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전용휴양소 운영 등

신청·접수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 기업/담당자 정보, 참여인원(명단 및 재직증빙은 대상 선정 후 제출) 등 작성

처리절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4)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Q&A

Q.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휴가샵 온라인몰 상품을 미리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나요?

A. 휴가샵 온라인몰은 참여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가샵에서는 여기어때, 제주도닷컴 등 40여개 제휴사 및 10만 여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휴가샵 대표상품 카탈로그'를 클릭하시면 휴가샵 입점 상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27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지역 중소기업 대상 종합 저작권 서비스 제공

전국 15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의 저작권 역량 강화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의 창출·활용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 1인·중소기업, 예비창업자(시니어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지원내용

- 상시지원(무료): 저작권산업현장 컨설팅, SW관리체계컨설팅, 교육, 상담
 - (저작권산업현장 컨설팅) 저작권 전문가가 기업에 방문하여 자문 제공
 - 저작권 법률분쟁 자문, 계약서 검토, 해외진출 관련 저작권 해결 등
 - (SW관리체계컨설팅) 기업이 보유한 SW 관리 방향 제시
 - 최적의 SW라이선스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방법 안내
 - (맞춤형 저작권교육)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운영
 - (저작권 상담) 저작권 등록 등 저작권 관련 제도 안내
- 저작권 육성지원[지원금 지급]
 - 저작물 보유 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 지원
 - 저작권 진단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전시회참여 지원
 - 선정 기업 당 5백만원 ~ 10백만원 지원, 각 지역센터별 5개사 선정
 - * 지역센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 지원 페이지(<https://copyright.or.kr/kcc/>)
 - *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센터 선택 신청

저작권 육성지원 모집공고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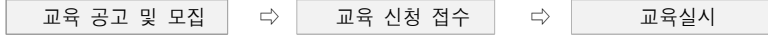
- 매년 5월 ~ 9월 모집공고 실시
 - * 지역별 모집공고 일정 및 지원사항 상이

제출서류

- (상시 서비스) 서비스 신청서
- (저작권 육성지원) 지원 신청서, 저작물 사업화 계획서 등

처리절차

● 상시 서비스



● 저작권 육성지원



지원규모

● 전국 15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23.9억원)

- * '21년 13개 지역센터 현황: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북(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대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남(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진흥원),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산(울산경제진흥원),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 '22년 예정 지역센터: 서울, 제주 지역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본부) : 055) 792-0222~0223
- 2022년 15개 지역센터 운영 지역



경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 031-8045-6757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326번길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033-650-3380
인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7층 ☎ 032-458-5033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리1길 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043-210-0855
대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동 1층 ☎ 042-864-5055
경북	경북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콘텐츠진흥원 ☎ 054-840-7063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601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053-655-5616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4층 ☎ 052-283-7154
전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3-281-4166
광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245 5층 ☎ 062-610-9534
전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창의벤처센터 4층 ☎ 061-339-6994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14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2층 ☎ 055-230-8818
부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1 센텀벤처타운 4층 403호 ☎ 051-749-9366

* 서울/제주저작권서비스센터 2022년 설립 예정 *

9-28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최대 2~3억원)

- 신청·접수**
- 온라인(<http://ctrd.kocca.kr>)을 통한 제안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분야) 문화산업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산업분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산업분야 중 선택
- * (예시분야) 영화,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공연, 미술공예, 문화재, 전통문화, 대중문화예술 등
- (사회적 가치창출분야) 문화산업분야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되, ①문화산업안전, ②문화소외계층 품목 신청

※ 본 사업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본문 3p 내외) 접수 후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세부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처리절차



처리절차

- 총 49.3억원, 17개 과제, 과제당 평균 2.9억원
* '21년 지원현황 : 과제수 23개, 지원금 63.2억원, 과제당 평균 2.7억원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팀 : 042-330-6643, 6647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29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 신청요건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신청요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총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50%, 기타 30% 등
순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순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60%, 기타 40% 등
예외사항	• 이번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문화콘텐츠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경우 자금조달 확정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 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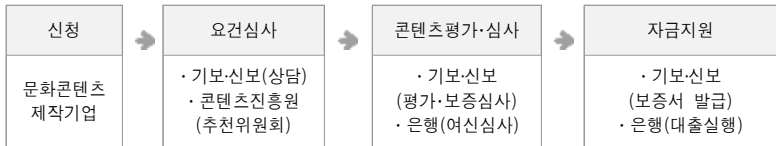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 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 선판매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처리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 및 신보에 직접 신청 가능

지원규모

- 2,000억원 내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7)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042-480-1322)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02-710-4562, 4567)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글로벌게임허브팀(031-725-6802)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061-900-6267)

Q&A

Q. 자금조달확정금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차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용어설명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9-30

스포츠 창업 지원

예비초기창업지원/창업도약센터 운영, 액셀러레이터 연계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미만 스포츠기업 대상 예비초기창업지원/도약센터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사업화 지원 및 투자유치 특화 보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일반)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사회적기업전담)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및 3년 미만 사회적기업
- (창업도약센터) 스포츠산업 분야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지원 받은 이력 있는 기업
- (액셀러레이팅 지원)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예비 창업자제외)
- (재창업지원센터) 폐업 경험 보유한 예비~3년 미만 창업자

지원내용

- (예비초기창업지원/창업도약/재창업) 센터별 보육기업 선발 통해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세미나 등 수준별 맞춤 창업보육(10개월), 사업화 자금(35~36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팅 지원) 전문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별 보육기업 선발 통해 투자유치컨설팅, 초기/후속투자지원, 피칭교육 등 투자유치 특화 보육(6개월), 사업화자금(45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터별 국고보조금의 20% 이상, 2개 이상 기업에 투자 의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예비초기창업지원/도약지원 기업 수 확대(100 → 140개),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업 수 확대(50 → 70개사), 재창업 지원(100 → 50개사)

신청·접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 1~2월 예정

처리절차

- 스포츠 예비 창업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등 260개사
 - * '22년 예산 13,80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2, 1543), 기업금융지원팀(02-410-1565)

9-31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경영개선, 마케팅, 자금조달, 해외전시 참가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년 이상 영위하고, 매출액 아래 해당 중소기업
 -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0억 이하

제외대상

- ▶ 부채비율 500%이상인 기업/전액자본잠식/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기준, 3개 과제 이내 자율선택,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과제 프로그램	지원비율	비고
성장동력확보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1억원 • 각 지원기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지원분야를 신청해야 함 ※ 과제 프로그램은 총 3개 이내로 제한 • '성장동력확보'(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해야 함
	마케팅전략 수립		
	판로개척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수립		
IPO/자금조달 컨설팅			
사업기반지원 (일반)	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스마트서비스		
	지식재산권·인증취득		
	전문가 자문		
해외전시참가			

●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성장동력확보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제품개발·기획 연구 및 컨설팅, 품질관리 ※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인건비 지원 가능
	마케팅전략 수립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브랜드개발(BI·CI 포함) 등 마케팅관련 컨설팅
	판로개척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펀딩 추진전략 등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설계, 스마트서비스 관련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수립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분석 포함)
	IPO/자금조달 컨설팅	기업평가, 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사업기반지원 (일반)	제품개발	금형제작,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금형)제작 지원, 기존제품 개선, 제품개발용 원부자재 구입 등
	국내·외 마케팅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달로그 등 -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기업·제품 홍보 홈페이지 및 쇼핑물 제작 - 광고송출 (단, 광고송출비는 2천만원 한도)
	온라인 판로개척	국내 또는 해외(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스토어(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포함) 입점 수수료 지원 - 입점 프로세스, 해외 지사 및 법인설립 지원 포함 * 단, 온라인쇼핑물 입점을 통한 판매수수료는 지원불가 - 클라우드펀딩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마트서비스	비대면 영업환경, 재택근무, 클라우드 업무환경,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도입
	지식재산권·인증 취득	지식재산권(IP) 및 친환경인증 취득 지원, 시험 및 테스트비용 등
	전문가 자문	조직·인사제도·노무·법무·성과평가 보상 등 각종 전문가 자문
	해외전시참가	부스임차비·장치비·편도운송비(전액), 해외파트너발굴비(100만원 내), 기업별 통역인력(50만원 내), 온라인전시회 콘텐츠 제작비(동영상·VR콘텐츠·e카달로그 등, 합계 500만원 내) - 지원기업이 참가희망 온·오프라인 전시회 선택하여 자율참가 - 지원기업 최종 선정 이후 참가한 전시회부터 지원

처리절차

- 스포츠중소기업 74개사 내외('22년 예산 8,440백만원)
 -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5)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9-32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해외진출 및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 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3년 평균 아래 매출액을 달성한 중소 스포츠기업
 - (용품제조업)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달성
 - (서비스업, 시설업)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달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 지사나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영업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경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사업분야	지원내용
사업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진단 및 역량 강화 -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지식재산권(IP) 및 친환경인증 취득 관리, 영업마케팅 전략 및 실행, 원가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신규사업 개발 전략,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지원 등 국내외 컨설팅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신시장 경영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브랜드 성장 - 해외 홍보·광고 영상 제작, 해외 매체 홍보활동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 연차별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년 지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 지원(필수)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80%	- 지원기업은 연도별 필수 사업 포함 2개 사업분야 이상, 최소 2.5억원 이상 지원 신청해야 함 - 기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2.8억원 * 한 사업 분야에 최대 2억원 까지 가능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필수) 해외마케팅 지원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처리절차

- 스포츠 중소기업 30개사 ('22년 예산 8,900백만원)
 - 지원기간 3년으로 10개사 이내 선정 예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6)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9-33

IP제품혁신 지원(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제품 현안해결을 통한 특허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기술적 난제(제품개선, 신제품 기획, 장치/공정개선, 기능성/디자인 개선 등)를 지식재산(IP) 분석으로 해결하는 컨설팅 및 검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중소기업
 - 협업기관별 추가 지원자격은 별도 공고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최대 비용/기간)	지원내용
협업과제	신제품기획	11천만원 / 7개월	고객지향적 특허제품기획 컨설팅 + 협업 후속지원(시제품제작, 출원)
	문제해결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컨설팅 + 협업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상) + 협업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8천만원 / 5개월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하) + 협업 후속지원
단독과제	신제품기획	7천만원 / 7개월	고객지향적 특허제품기획 컨설팅 + 후속지원(목업제작)
	문제해결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컨설팅 +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상) +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4천만원 / 3개월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하) + 후속지원

- 연간 82개 기업 내외(예산 41.3억원)
 - (협업과제) 최대 11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이내에서 지원
 - (단독과제) 최대 7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이내에서 지원
- * 기업부담금 기준

기업 매출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총 40%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지annah와 달라진 내용

* 협업규모 확대를 통해 후속지원 강화, 단독과제(개선형) 지원규모 확대

신청·접수

- 공모기간 중 해당 사업신청관리시스템으로 신청(1~4月)
 - (협업과제) 협업기관의 사업신청관리시스템 접수
 - (단독과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접수(www.kipa.org)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식재산 활용현황, 제품 경쟁력, 기업 경쟁력, 사업 경쟁력 등
- * 지원신청서, IP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등 제출

문의처

-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 : 042-481-5867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02-3459-2937
- 홈페이지 : www.kipa.org

Q&A

Q.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제품화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협업과제와 단독과제에 중복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협업과제 지원 탈락기업이 단독과제에 재신청 가능합니다.(협업과제, 단독과제 순차공고) 단, 중복지원을 위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용어설명

IP활용계획서 : 특허적용제품 정보, 핵심 니즈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서류로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기술, 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9-34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22년 수출 예정** 기업
 -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 2022년 수출예정이 없는 기업
- ▶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중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개발 전략수립(특허맵·디자인맵 등),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상표/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IP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지원

- 신청·접수**
-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 (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량평가(IP스펙트럼) 40점 + 정성평가 60점
 - * 정량평가(IP스펙트럼) : 연구역량, 지적권역량, 기업역량, 글로벌 역량에 대한 정량 평가
 - *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역량 및 파급효과, 경영자의 의지 및 사업비전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및 지원절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 및 세부사업선정

컨설팅 수행

문의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Q&A

Q.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른데요. 어느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해야 하나요 ?

A. 글로벌 IP스타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Q.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선정되나요 ?

A. 아니요, 수출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수출예정계획서와 함께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후 2년 이상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9-35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 상황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외국기업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지 원 내 용
특허 실용신안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및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기업당 최대 0.5억원 컨설팅 비용 지원

* 특허침해소송 대응인 경우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 기업부담금

기업구분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 부담률	총 30%	총 30%	총 50%
	현금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현물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 신청·접수**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매월 공고를 통해 기업모집. 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시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선정) 심사 결과 80점 이상

* 기업 역량(규모, 지식재산 보유 수)과 컨설팅 활용계획(제품 관련 기술의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수출전략의 적극성)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042-481-3573 또는 592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특허 : ☎ 1600-8145, ARS 3번 / ipkoipa@koipa.re.kr
 - 상표 : ☎ 1600-8145, ARS 4번 / kbrand@koipa.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 www.ip-navi.or.kr

Q&A

Q. 현재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출을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에서 수출예정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Q.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나고야 의정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해외기업과의 분쟁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권리별로(특허·실용신안 / 상표·디자인) 연 1회 지원 가능합니다.

응어설명

나고야 의정서 : 공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 공유를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을 말함

9-36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상표를 모니터링하여 우리기업에 제공 및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URL) 삭제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중
 - 지원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당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 출원중이거나(출원신청서, 출원확인서 미인정)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 유효기간이 경과한 권리 등

지원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신청을 통한 게시물 삭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상표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 확대 : 중국·베트남·태국·인니에서 싱가포르(시범)까지 확대

신청·접수

- (신청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사업공고 확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2월 / 5월 / 8월 ※ 신청기간 변동가능
- (처리기간) 3개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규모, 위조상품 유통규모, 지재권 보유현황 등을 기반으로 종합 평가(서면) 후 선정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02-2183-5885(중국), 02-6250-5253(아세안)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Q&A

Q. 중국 및 아세안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이 삭제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위조상품 유통대응 파트너십을 체결한 쇼핑몰에서만 게시물 삭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쇼핑몰은 중국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 티몰국제, 1688, 알리바바닷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세안 라자다 및 쇼피입니다.

용어설명

상표브로커 : 우리기업 관련 상표를 해외에서 3건 이상 다수 출원한 상표도용 의심자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

한국창업보육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예비창업자(대학생 포함), 거점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 * 창업보육매니저 등 기업보육담당자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 운영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중기부·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으로 전국 창업보육센터 대상 사전 지식재산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거점 교육센터 선정 및 지식재산 교육 운영
 - 거점 교육센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풀 구성
 - * 각 창업보육센터 수요에 따라 ①범용센터(지식재산 개요 중심교육) ②특화센터(센터기술 기반 지식재산 융합교육)로 구분하여 운영
 - 센터별 3회차 내외 기술분야별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
 - * 회차당 3시간 내외로,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수준 및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개요교육부터 분쟁대응, IP금융, 특허정보 활용실무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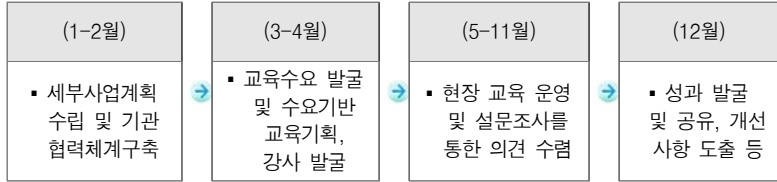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교육 거점 센터 수 확대 운영 예정(안) ('21년 10개 → '22년 12개)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교육광고 및 신청 접수 안내 진행

● 추진절차(안)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3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Q&A

Q.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지정 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9-38

전경련경영자문단 경영자문

중소창업기업 무료 경영자문

풍부한 현장경험과 경영노하우를 가진 대기업 임원 출신 자문위원 177명과 법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경련경영자문단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스케일 업을 위해 무료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지원내용 ● 일반자문(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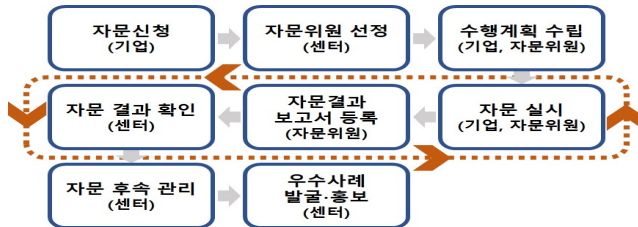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관리, 마케팅, 기술·생산·품질, 해외진출, 자금·재무, 인사·노무 등 희망 자문분야에 대해 원포인트 현장자문 제공

● 비즈니스 멘토링(중장기)

- 전경련 경영자문위원이 6개월간 '비상근 고문(멘토)'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중장기 무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일반자문 진행 중 종합적인 경영자문 희망 시 센터에 서류 요청 및 제출 후 진행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목표 달성시까지 지속 자문(장기·밀착공동 자문)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9-39

경영닥터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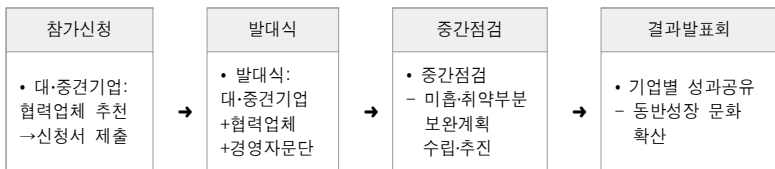
대·중견기업, 협력업체, 경영자문단 3자 협력 자문으로 대·중견기업 1·2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6개월간 현장 중심 자문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 대·중견기업의 협력업체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실천

협력업체	전경련 경영자문단	대·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신청→대·중견기업 - 경영애로 및 경영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매칭→협력업체, 대·중견기업 결과 안내 - 담당자문위원 선정(매칭) - 자문프로그램 기획·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추천→센터 - 참여업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협조 - 경영자문 CEO 참여 - 자문이행 전담TFT 설치·운영(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제공(6개월 이내) - 종합 경영진단, 강점·약점 분석 - 마케팅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협력업체에 무료경영자문, 경영노하우 전수 - 맞춤형 교육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점검 - 협력업체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협력업체 애로 파악·지원 - 협력업체 경영닥터제 성과 분석·취약부분 보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결과 성과분석 - 실행내용에 대한 성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 결과발표회, 비즈니스멘토링 등 사후 지원·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 관리

신청·접수 ● 센터 공문발송(대·중견기업) 및 홈페이지 공지 → 대·중견기업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참여기업 확정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3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9-40

중소기업 경영진단

중소기업 경영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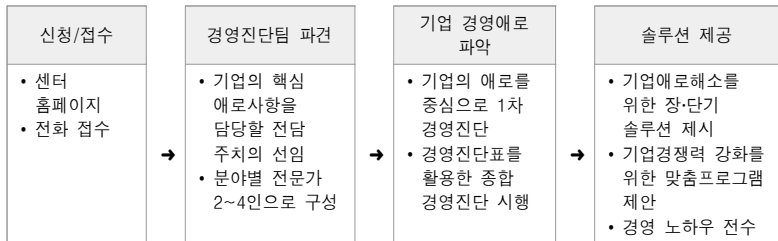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가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생산관리, 연구개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내부의 경영역량을 분석하고 경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지원내용 ● 경영진단 매뉴얼을 활용한 종합 경영진단 시행

- 진행기간 : 1개월 이내(협의 후 조정 가능)
- 장 소 : 현장방문
- 진단위원 : 전경련 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4인으로 구성된 경영진단팀
- 진단대상 : 중소기업(CEO, 부문별 임원, 부서 등)
- 진단내용 : 기업을 방문하여 각 분야별 현장진단 실시
- 진단비용 : 투입 인력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유·무료 협의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화(02-3153-7950)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9-41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 시장개척, 법무 등 기업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대상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 CEO 및 임직원
 - 교육접수 : 연중수시
 - 교육장소 : 신청기업에서 준비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커리큘럼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 개척, 창업, 법무, 기타 8개 분야별 93개
-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or.kr

Q&A

Q. 교육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 CEO 및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주제에 맞춰 자문위원 강사를 매칭 및 파견해드립니다.

Q. 교육커리큘럼에 희망하는 교육이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희망하는 교육이 커리큘럼에 없는 경우 센터에 직접 연락하시어 희망하는 교육을 말씀해주시면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드립니다.

9-42

중장년 전직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대상으로 전직스쿨, 생애설계, 재도약프로그램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장년 구직자를 중소기업에 알선하는 취업 매칭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중장년 채용 기업

지원내용 ● 전직스쿨프로그램

- 내용 : 중장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전직계획 수립 및 구직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 : 기업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나뉘서 운영

* 기업과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단위별로 운영

* 일반과정: 10인 이하의 소규모 퇴직으로 기업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퇴직 예정자를 위한 과정 운영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내용 : 장년에 진입하는 시점에 생애주기의 이해와 생애경력 점검을 통해 인생 후반부 일(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구성 : 구직자과정과 재직자과정으로 나뉘서 운영

*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 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재직자

● 재도약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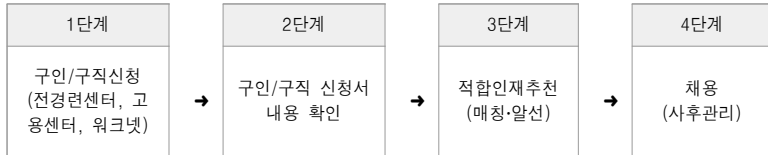
- 내용 : 중장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퇴직 후 변화관리, 역량진단, 눈높이 조정, 취업 역량 강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 재취업 및 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인생 2막을 지원

- 구성 : 구직자 과정

*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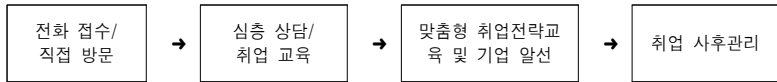
● 취업 알선

- 내용 : 중장년 채용 희망 중소기업과 적합한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인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맞춤 일자리를 알선



신청·접수

-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2-3153-7962~3)에 전화 신청·접수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02-3153-7962~3

Q&A

Q. 40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본 사업은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Q. 비용은 무료인가요?

A. 네, 저희 센터에서 제공되는 중장년 교육 및 취업 알선은 모두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9-43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를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인증기간 유효한 것에 한함
 - 고용우수인증 기업(지자체, 고용노동부 발급) 및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 5점 부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년도 본 사업을 통해 광고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 단, 라디오 제작비 지원 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 ▶ 직전 2개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 중도 포기한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지원내용

- TV :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 지원금액 최대한도 4,500만원
- 라디오 :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70%, 지원금액 최대한도 300만원
 - 지원금액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 완료 후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 지급(부가세 제외)
 - 본 사업은 지원대상 선정기업의 신규 제작 방송광고물만 대상으로 인정함(신규 제작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및 접수
 - 1월말 ~ 2월초 공모 개시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계량) 성장성(매출증가), 안정성(순이익),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 ▶ (비계량) 상품경쟁력, 독창성(시장 개척 및 선도의 수준)
 -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구성,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7~7321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 기업마당 : www.bizinfo.go.kr
- ※ 상기 사항은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2년 지원사업 모집 시 내용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2월 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9-4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송출비를 지원

비용 부담이 높은 방송광고 송출비의 할인 또는 보너스 광고 제공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창업진흥원지원기업, KOBACO 방송광고지원 기금사업수행기업, 스마트공장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한 것에 한함
 - 우대사항 : 신기술개발/정부선정 등의 해외수출기업, 혁신성장동력 분야 제품 생산기업, NEP/NET 등 신기술/아이디어제품 공인 생산업체, 국제전시회/신기술발명전시회 수상 경력, KOBACO 혁신형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지상파(전국) 광고를 집행한 기업
- ▶ 본 사업을 통해 광고 송출비를 지원받은 기업
- ▶ 방송광고와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내용

- 방송광고 송출비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제공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해 매월 20일까지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혁신노력, 성장성 및 파급효과, 광고 계획 등
-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7~7321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Q&A

Q.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도 이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지원대상이 되면 TV와 라디오 광고비 중 하나만 지원받나요?

A. 아니요, 지원기업이 KOBACO를 통해 광고 청약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 지원혜택을 드립니다.

9-45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소상공인 지역방송 광고제작·송출비 지원

자금 및 정보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방송광고 시장과 소상공인이 상호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가점사항(2점/100점) 부여 대상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고시' 참조)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 선발된 소상공인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있는 기업
- ▶ 방송광고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등)
-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업종(유형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및 프랜차이즈 업종
-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에서 동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기업

지원내용

- 전체 제작비와 송출비(부가세 제외)의 90% 지원(최대한도 900만원)
 - 제작비는 선정 이후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에 대해서만 지급
 - 송출비는 지역밀착형 매체(로컬 매체) 광고시에만 지원
 - 사업수행 완료 후 협약서에 따라 검증 절차를 완료한 후 지원금 지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기업 확대 : 136사 → 177사(1차 107사, 2차 70사 모집)
 - * 비수도권 지역 최소 100사 이상 선발 예정
- 해당 지역 전문광고인에 의한 1: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1차 공모 : 1월 말 ~ 2월 초 예정(지원대상 발표 3월 초)
 - 2차 공모 : 6월 중 예정(지원대상 발표 7월중)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계량) 지원항목 다양성 (제작, 송출 지원)송출지원)제작지원)
- ▶ (비계량) 사업이해도,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파급효과

- 문의처**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 기업마당 : www.bizinfo.go.kr
 -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02-731-7317~7321)
 - 비수도권 중소기업 권역별 상담센터
 - 부산/경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051-751-0400)
 - 대구/경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053-767-9900)
 - 대전/충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042-533-3821)
 - 광주/전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062-652-3600)
 - 전주/전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북지소(063-286-0904)

Q&A

Q. 광고제작이나 송출사업 중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A. 아니오, 제작, 송출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지원한도내에서 사용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 진행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연내 사업 완료 후에는 별도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 방송권역이 전국이 아닌 지역 한정(도, 시 등)된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 광고, 지상파 방송(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등), 케이블TV(지역 SO) 및 IPTV 큐툰광고 포함

9-46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국내 ICT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결과에 도출된 주요 취약점 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을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ICT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불가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지원불가
-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 신청기업의 ICT인프라 규모, 업종, 정보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별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 정보보호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조치가 시급한 보안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을 매칭형태로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risc.ki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 5월 중순 ~ 10월 말

문의처

- 홈페이지 참고 : risc.kisa.or.kr

Q&A

Q.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은 전부 무료 인가요?

A. 정보보호 컨설팅은 전액 무료이며, 보안솔루션은 기업의 일부 매칭비용이 부담됩니다.

Q. 솔루션 구입 없이 컨설팅 컨설팅만 또는 컨설팅 없이 솔루션 구입만 진행이 될까요?

A.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을 모두 진행해주셔야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47

ICT영세·중소기업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저예산으로도 지속·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불가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지원불가
-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지원내용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지원
 - 기업의 최소한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된 정보보호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을 매칭형태로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risc.ki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 5월 중순 ~ 10월 말

문의처

- 홈페이지 참고 : risc.kisa.or.kr

Q&A

Q.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은 전부 무료 인가요?

A.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은 기업의 일부 매칭비용이 부담됩니다.

Q.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risc.kisa.or.kr/>)에서 운영중인 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로 정보보호 수준현황을 확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9-48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

중소기업 웹보안 수준 강화

ICT 중소기업, 침해사고 발생 중소기업, 기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웹취약점 점검, 웹셀 탐지도구, 웹방화벽, 디도스 사이버대피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보안수준 강화 지원

지원대상

- ICT 중소기업, 침해사고 발생 또는 서비스 이용 희망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유의사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웹취약점 점검
 - 해킹 사고에 많이 악용되는 홈페이지 취약점(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스크립팅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 제공
- 웹셀 탐지도구(휘슬)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파일인 웹셀 및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등을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 웹방화벽(캐슬)
 - 홈페이지 대상 해킹공격 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 홈페이지로 향하는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여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신청·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www.boho.or.kr 접속 → 보안점검 메뉴 →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클릭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온라인 양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웹취약점 점검



● 웹셀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지원규모 ● 국내 중소기업 대상 무료 웹보안 강화 서비스 보급·지원 (예산 2.8억원)
 * '21년 지원현황 : 웹취약점 점검-웹셀 탐지도구-웹방화벽(약 18,000여건),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약 5,000여건)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방역단 : 02-405-5274, 5584
 ● 자세한 사항은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참고

Q&A

Q.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닌 개인사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휘슬은 정보보호 전문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용이나 연구용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 웹셀 탐지도구(휘슬)과 웹방화벽(캐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휘슬은 공격자가 웹서버에 설치한 웹셀 등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이며, 웹방화벽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웹셀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해킹도구

디도스 : 공격자가 대상 웹 서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흘려보내 웹 서버에 과부하를 유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